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45

발의연월일: 2020. 8. 3.

발 의 자:김희국・김석기・구자근

추경호 · 최승재 · 김상훈

김영식 · 김승수 · 조수진

하영제 · 윤두현 · 서정숙

윤주경·강대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계획인 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외부 감사 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 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의 실시 대상에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및제112조제1항).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112조에 따른 회계감사의 실시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를 "하나의 시기에 해당하거나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하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112조에 따른 회계감 사의 실시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2조(회계감사) ① 시장·군수 제112조(회계감사) ①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 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하나의 시기 에 해당하거나 조합이 총회를 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 등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개최하여 조합원의 3분의 1 이 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 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 장·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 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

기에 한정한다.

- 1. ~ 3. (생 략)
- ② ~ ④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